

水產業協同組合의 成立과 그 發達過程에 관한 段階的 考察

A Study on Foundation and Development
of Fisheries Cooperative Organizations

崔 正 銚
Jeang-Yoon Choi

目 次

I. 序 論	2. 水產業協同組合의 形態別 綜合的 比較
1. 研究目的	3. 水產業協同組合 發足上의 特徵
2. 定 義	4. 水協系統組織의 段階構造
3. 研究方法	IV. 水產業協同組合의 段階的 變化
II. 水產業協同組合의 成立過程	1. 水協成立以後에 있어서 水協組織의 發展段階
1. 水產業協同組合成立의 社會經濟的 背景	2. 初創期에 있어서 水產業協同組合
2. 水產業協同組合法의 制定過程	3. 水協組織의 全國的 擴大化
3. 水產業協同組合法의 特徵	4. 水協經營의 危機
4. 各國의 水協制度 採擇現況	5. 水協組織의 強化와 그 再編成化
III. 水產業協同組合의 成立과 其 形態	V. 結 論
1. 水產業協同組合의 諸形態 및 其 機能	參考文獻

I. 序 論

1. 研究目的

本研究는 韓國에 있어서 水產業協同組合制度의 成立背景과 成立以後에 있어서의 그의 組織 및 機能의 變化過程을 研究하는 데 目的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水產業은 지난 60年代初以來로 年平均 12% 以上의¹⁾ 高度成長을 持續的으로 遂行함으로써 漁業의 技術, 生產構造 및 그의 經營規模 등의 諸側面에 걸쳐 실로 눈부실 정도의 發展을 이룩하여 온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水產經濟構造는 그의 原點에 極少數의 大規模 資本制의 漁業經營을 頂點으로 그 아래에 全體 水產經營의 壓倒的 多數를 占하는 零細小規模漁業經營을 그의 底邊構造로 하는 極斷的構造 내지는 構造的 重層性을 改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全體 水產業從事者의 不過一割 程度에 지나지 않는 극소수만이 獨自的經營形態로서 的存立條件을 갖추고 있을 뿐 나머지 九割以上의 經營은 生產 및 生產物의 販賣活動 등의 基本經營

※ 本研究는 文教部學術研究 助成費에 의한 研究임.

1) 水協中央會, 主要業務指標, 1979, p.6.

수 산 경 영 론 집

활동을 스스로 遂行해 나갈 수 없는 狹少한 脆弱的 經營形態로 存立해 있으며,²⁾ 그 가운데서도 全國의 漁村에 散在해 있는 漁家經營은 그의 代表的인 形態이다.

水產業協同組合은 바로 이러한 微弱한 中小漁業者를 위해 派生된 經濟制度이며 組織이다. 따라서 여기에 加入되어 있는 漁民의 數는 現在 119,243名(1979年)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全漁家戶數의 80%에 該當한다.³⁾ 이와 같이 大部分의 漁民이 水產業協同組合에 加入해 있다는 것은 水產業의 經營規模가 그만큼 零細하다는 것과 水產業協同組合의 事業活動範圍가 넓다는 것을 뜻한다. 水產業協同組合은 이러한 零細水產經營의 經濟的 限界를 克服하기 위해 協同組織을 促進하고 각종의 事業實施를 통해 그들의 經濟的 利益을 增大시키는 한편 社會的 地位의 向上도 동시에 圖謀해 나가고자 하는 것을 그의 基本目標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水產業協同組合制度와 組織이 우리나라에 最初로 樹立된 것은 1962年이며, 그로부터 지금 20년의 歷史가 경과되고 있다. 그리하여 出發當時에는 簡單하고 小規模組織에 지나지 않던 水協組織은 그의 年輪이 거듭됨에 따라 이제 初期와 比較할 수 없는 巨大한 組織으로 成長하였을 뿐 아니라 水協法에 羅列하고 있는 事業의 全部를 實施해 나가는 複雜한 事業體로 變貌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水產業協同組合의 成長이 漁民經濟에 對應해온 結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그의 獨自的 活動의 結果인지에 대해서는 分析結果를 통하여 밝혀질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本研究는 이러한 水產業協同組合의 變遷過程을 考察하고 그것이 어떠한 發展法則에 好아成長하였으며, 그 變遷要因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것을 解明하는 데 主眼을 둔다. 지금까지 水協에 대한 이와 같은 動態的인 研究는 전혀 없었던 것이므로 本研究는 한편 水協運動의 最近의 歷史를 理解하는 데도 그 기여가 될 것으로 본다.

2. 定 義

여기서 「水產業協同組合」이란 1962年에 制度化된 現行 水協法下에서 成立되고 있는 水產業協同組合의 諸種類를 가리킨다.

現在 制度의 으로 設立되어 있는 水協의 種類로서는 「水協中央會」를 비롯하여, 「地區別水協」, 「業種別水協」, 「水產物製造水協」 및 「漁村契」의 5形態가 있다. 이들 形態 全部를 本研究의 對象으로 하되 주로 漁村契를 除外한 上記 4形態를 中心으로 이를 包括的으로 다루어 나가고자 한다.

따라서 이들 形態外의 漁民團體가 비록 類似한 性格과 機能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本研究의 對象에서 除外될 뿐 아니라 水協의 한 形態로서도 看做되지 않는 것이다.

한편 本研究에 있어서 研究範圍는 위의 水協 5形態에 限定하는 것이며, 또한 歷史的인 考察의範圍는 現存 水協成立의 直接的 背景이 되는 1960年代以後가 된다. 따라서 水協前身組織인 舊水產團體에 대한 상세한 考察은 여기서 除外된다.

3. 研究方法

本研究는 水協組織의 成立과 發展의 要締인 制度의 側面에 重點을 두어 段階別로 이를 考察코자

2) 水產廳, 沿近海漁業振興計劃(1977~1981), p. 31.

3) 水協中央會, 前揭書, p. 6.

水産業協同組合의 成立과 그 發達過程에 관한 段階的 考察

한다. 그리하여 全體的으로 本研究의 進行順序를 制度樹立의 段階, 組織成立의 段階, 成立以後의 組織發達의 段階로 크게 3分하며, 다음 組織成立 以後에 있어서 그의 展開過程에 대해서는 특히 이를 4段階로 다시 細分하여 具體的으로 分析코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特定 水協形態나 組織에 대한 個別的 分析方法이 아닌 全形態·全組織을 對象으로 이를 包括的으로 觀察코자 하며, 必要한 部分에 대해서는 外國의 水協現況과 比較코자 한다.

이러한 研究方法은 아직 우리나라 水協에 대해서 그 全體를 歷史的인 成立過程에서부터 現在에 이르기까지 이를 綜合的·體系的으로 다루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水協의 成立過程을 이해하는 데 必要한 方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I. 水産業協同組合의 成立過程

1. 水産業協同組合成立의 社會經濟的 背景

1) 水産業의 長期的 停滯와 漁村經濟의 窮乏

解放以後 韓國의 水産業은 6.25動亂 및 사라호 태풍 등의 잇따른 人爲的·自然的 被害로 말미암아 水協이 發足되는 1962年까지 십수년간 長期的 沈滯의局面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말았다. 여기에다 他產業의 未發達로 漁村은 過剩人口까지 包容해야만 하였으므로 漁民經濟의 窮乏은 더욱 加重되었다.

1961年에 政府는 農漁村經濟의 救出을 위해 「農漁村高利債整理法」을 公布하고 무려 1,517億화으로 集計된 農·漁民負債整理를 政府次元에서 解決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도,⁴⁾ 解放以後 農漁村經濟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解放以後의 水産業成長은 다음의 <表-1>과 <그림-1, 2, 3>을 통해서 보면 1946年～1961年까지 16年간 그 成長率이 年平均 2.9%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5個年間으로 나누어 段階別로 分析해 보면, 1946～1950年까지 5年間에 漁獲高는 계속 減退되었으며, 1950年에 와서는 해방직후에 비해 約 10萬t 가까운 生產量 감축을 보였다. 이는 1950年 6月 25일에 발발한 6.25動亂의 影響이 커던 것으로 볼 수 있다.

1951～1955年에 이르는 5個年間에 있어서도 계속 減退되고 있었으며, 1960年까지 이러한 停滯現象은 지속되었다.

이와 같은 水產物生產의 減退와 水産業成長의 長期停滯現象은 漁民所得指標인 漁業의 附加價

<表-1> **解放以後 水產物總產出高推移** (단위: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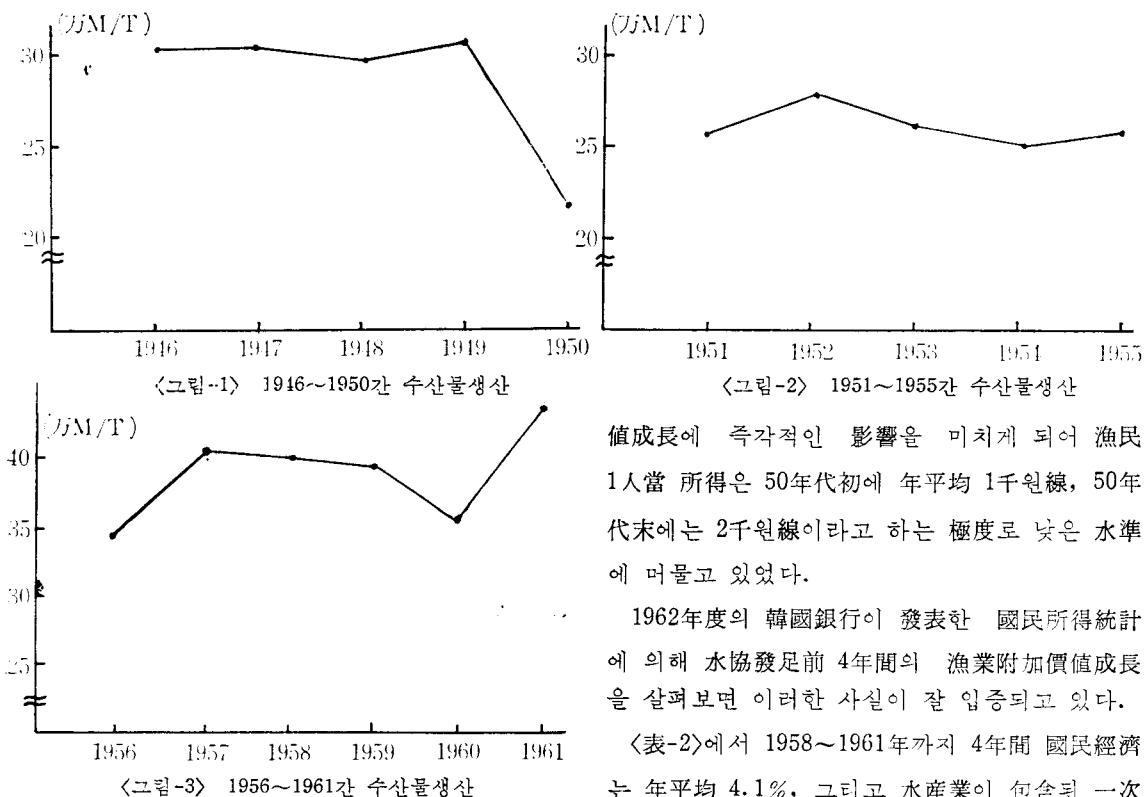
				漁獲高	養殖高	計	比 (단계별 成長率)
1	9	4	6	298,723	6,018	304,741	
1	9	4	7	301,952	4,295	306,247	
1	9	4	8	285,148	8,611	293,759	-7.8
1	9	4	9	300,149	8,261	308,410	
1	9	5	0	216,191	3,259	219,450	

4) 釜山日報, 1962年 1月 12日.

수 산 경 영 론 집

1 9 5 1	264,655	2,194	266,849	
1 9 5 2	277,618	4,231	281,849	
1 9 5 3	258,036	8,959	266,995	-1.2
1 9 5 4	249,536	5,106	254,642	
1 9 5 5	259,234	6,661	265,895	
1 9 5 6	340,916	5,645	346,561	
1 9 5 7	403,157	6,152	409,309	
1 9 5 8	395,189	8,115	403,304	
1 9 5 9	382,125	9,935	392,060	4.9
1 9 6 0	342,470	14,711	357,181	
1 9 6 1	435,567	12,067	447,634	
年 平 均 增 加 率(%)	2.9	6.3	2.9	

資料：水產廳，韓國水產史，1968，p. 592.



漁民 1人當所得은 50年代初에 年平均 1千원線, 50年代末에는 2千원線이라고 하는 極度로 낮은 水準에 머물고 있었다.

1962年度의 韓國銀行이 發表한 國民所得統計에 의해 水協發足前 4年間의 漁業附加價值成長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이 잘 입증되고 있다.

<表-2>에서 1958~1961년까지 4年間 國民經濟는 年平均 4.1%, 그리고 水產業이 包含된一次

産業全體는 4.0%의 安定된 成長率을 示顯하고 있는데 反해, 漁業은 같은 기간에 -0.1%라는 負의 成長率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期間은 解放後 水產業의 高度成長期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그 以前의 漁業附加價值成長率의沈滯現象에 대해서는 더 以上 말할 나위조차 없다.

水産業協同組合의 成立과 그 發達過程에 관한 段階的 考察

〈表-2〉 國民總生產額과 水產業 附加價值成長率 比較 (單位 : %)

	1958	1959	1960	1961	年平均
國民總生產額	5.5	4.4	2.3	4.2	4.1
一次產業	0.8	-1.1	0.1	10.1	4.0
漁業	-6.1	0.7	-12.9	17.9	-0.1

註 : 1965年度 不變價格 基準임.

資料 : 韓國銀行, 韓國의 國民所得計定, pp. 270~271에서 작성.

〈表-3〉 解放以後 水產人口의 推移 (單位 : 人)

	1946	1950	1955	1960	1961	平均增加率(%)
計	408,369	625,291	678,779	848,275	859,025	6.9
漁業	273,499	392,124	422,831	569,942	545,525	6.2
養殖業	108,161	165,504	202,607	238,954	271,291	9.4
製造業	26,709	67,663	53,341	39,379	42,209	3.6

資料 : 水產廳, 前揭書, p. 567.

다음 〈表-4〉는 解放後 1961년까지 漁民所得水準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漁業成長의 長期的 停滯化로 인해 漁民所得水準은 〈表-4〉에서 보는 것처럼 國民平均所得水準의 30%에 지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現象은 16年間이나 계속되었다.

반대로 解放以後 水產人口는 全體 水產業成長率의 倍以上에 달하는 年平均 6.9%의 累積的 增加現象을 나타내고 있었으므로(〈表-3〉 參照), 漁村經濟의 窮乏化程度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表-4〉 解放以後 漁民所得 推移 (단위 : 원)

國民1人當附加價值(A)	漁業人當附加價值(B)	B/A %
1 9 5 3	2,381	32.2
1 9 5 4	3,212	37.1
1 9 5 5	5,417	30.1
1 9 5 6	6,916	37.4
1 9 5 7	8,722	32.1
1 9 5 8	8,880	31.7
1 9 5 9	9,207	36.1
1 9 6 0	9,989	33.6
1 9 6 1	11,685	21.4

註 : 1) 經常市場 基準임.

2) 總附加價值를 人口數로 나눈 것임.

資料 : 韓國銀行, 前揭書, pp. 122~172.

수 산 경 영 룬 집

이러한 條件에도 不拘하고 舊水產團體는 여전히 그 機能이 不振狀態에 있었으므로 漁村經濟의 振作을 위한 團體改編의 問題가 論議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 水產團體運營의 亂脈

(1) 解放後 日帝 水產團體의 存立根據

解放後 거듭되는 混亂期에 있어서 極度로 紊亂해진 漁業秩序를 回復하고 漁業民主化의 實現을 促進시키는 데는 獨立國家가 갖추어야 할 새로운 水產業制度의 創設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課題였다. 이러한 要請에 의해 1953年 9月 9日 水產業法의 成立을 보게 되고, 이어 同施行令과 漁業資源保護法, 漁業取締規則 등 關係法令도 차례로 公布됨으로써 解放後 8年동안 存續되어 온 日帝의 水產業制度는 모두 廢止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水產團體에 관한 制度만은 制定된 水產業法 附則 第79條를 통하여 새로운 水產團體制度의 樹立을 볼 때까지 「朝鮮漁業令」에 根據를 둔 植民地 水產團體制度를 그대로 인정하게 함으로써 漁業組合을 위시한 舊水產團體는 解放後 18年동안 存續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結局 새로운 協同組合的 團體 設立을 遲延步로 지연시킨 결과가 되고 말았다.

水產業法 附則 第79條의 内容과 여기에 關係되는 「朝鮮漁業令」의 關聯條項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⁵⁾

「朝鮮漁業과 漁業에 關한 臨時措置法은 廢止한다. 但, 「朝鮮漁業令」第6章은 水產業에 關한 組合法이 實施될 때까지 存續한다.」

朝鮮漁業令 第6章이란 同令 第43條에서 第60條에 이르는 漁業組合 및 水產組合設立에 關한 規程을 말하는 것이다.⁶⁾

그러나 水產業法 附則 第79條의 内容은 위의 「朝鮮漁業令」의 18個條項에 局限된 것이 아니고 「朝鮮漁業令」以後에 나온 水產團體에 관한 각종 規定과 附則까지 다 包含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水產團體는 解放以後에 있어서도 漁業組合의 漁業權管理機能과 官僚的 運營方式을 基於한 日帝時代부터 強要되고 있었던 각종 行政補助的 役割이 그대로 담습되어 왔다.

(2) 水產團體運營의 亂脈

① 韓國水產業會의 機能喪失

韓國水產業會는 日帝末期 戰時體制의 產物로 登場된 「朝鮮水產業會」로부터 改組된 解放以後 最初의 水產團體 中央組織이었다. 解放以後 3년까지 日帝時代의 名稱 그대로 存立해 오다가 1948年 政府樹立을 契機로 1949年 1月 30일에 그 名稱을 「韓國水產業會」로 改稱하였으며,⁷⁾ 다시 1952年 11月에는 「大韓水產中央會」로 再編되는 과정을 보였다.

이러한 「韓國水產業會」의 役割은 解放後 3年間의 美軍政下에서 「朝鮮水產業會」가 그려했던 것과 같이 6.25動亂後 混亂했던 水產業界를 再建하는데 있어서 物資의 配給, 水產資金의 供給業務를 擔

5) 水產業法(1955. 9. 9. 制定), 第79條.

6) 1929年에 制定되고 1930年 5月1日부터 施行되었으며, 이중 團體規程은 1962年 水協發足直前까지 有効하였다.

7) 農林部, 農林行政概觀(1945~1965), p. 285.

水産業協同組合의 成立과 그 發達過程에 관한 段階的 考察

當・遂行해 나가는 것이었다.

1947年 朝鮮水産業會當時에 設置된 「金融部」를 引受하여 漁業組合의 所要資金을 直接 供給하고, 水産業資材를 系統購買하는 등 그의 役割은 多方面에 걸쳐 遂行되었다.⁸⁾

그러나 政府는 1951年에 突然히 韓國水産業會에 대하여 指導事業만을 남긴채 다른 機能은 일체 中止하도록 措置를 함으로써,⁹⁾ 系統金融, 系統購買의 길이 막힌 水産業界는 水產金融과 資材購買를 위해 市中銀行 및 市場을 直接 相對해야 하는 直接去來形態로 轉換됨에 따라 많은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金融問題에 있어서의 타격은 다음 <表-5>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水產金融이 市中의 4個銀行이 分散·取扱함으로 말미암아 어민들의 利用에 不便이 커던 것은 말할 必要도 없었고, 擔保力이 미약한 大部分의 漁民들은 資金의 融資惠澤마저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곧 零細漁民들에게 있어서 水產金融問題의 解決조차 못하는 水產團體 그 自體의 存在意義를 否定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表-5〉 解放後 一般市中銀行의 水產資金貸出實績(1957) (單位: 千원)

	朝興銀行	商業銀行	第一銀行	產業銀行	計	比率(%)
漁業資金	199,430	490,528	433,681	48,423	1,616,062	52.7
委託販賣資金	57,000	250,689	214,255	90,380	612,324	20.0
共同購入資金	—	37,800	42,855	33,812	114,467	3.7
收集資金	4,300	51,708	211,090	91,381	358,479	11.7
養殖資金	4,000	2,604	97,444	34,700	138,748	4.7
製造資金	22,000	—	134,729	70,500	227,229	7.4
合計	286,730	833,329	1,134,054	813,196	3,067,309	100.0
比率(%)	9.3	27.2	37.0	26.5	100.0	

資料：農協中央會, 農業年鑑, 1962, p.1-180.

(2) 購買事業의 不振

韓國水産業會의 經濟事業中斷은 一線水產團體의 購買事業活動에 즉각 影響을 미치는 것이 되었다.

이로 인해 50年代의 水產團體購買事業은 대단히 不振한 狀態에 있었으며, 解放後 累進的 인플레이션으로 각종 資材價格의 격심한 滕貴率을 보이고 있었는데도 水產團體는 여기에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었다. 그것은 大部分의 購買事業이 系統組織을 통해 이루워지고 있었던當時에 있어서 系統購買의 길이 차단된 데 根本原因이 있었던 것이다.

解放以後 1947年에서 1952年까지의 6年間에 있었던 水產業資材價格의 滕貴率과 魚價와의 현저한 挾狀價格差를 보면 다음 <表-6>과 같다.

8) 上揭書, p.285.

9) 이는 당시 이 기관이 광범위한 권한과 기능수행과정에서 여러가지 물의를 빚고 있었기 때문이다
(上揭書, p.285).

수 산 경 영 론 집

〈表-6〉

1950年代 釜山漁業組合調査 魚價와 資材價와의 對比

	魚 價 指 數	資 材 價 格 指 數
1 9 4 7	100	100
1 9 4 8	135	134
1 9 4 9	139	238
1 9 5 0	314	653
1 9 5 1	441	3,018
1 9 5 2	1,257	3,404

資料：海務廳， 해무， 1959, 5月號， p. 110.

따라서 政府委嘱事業이었던 油類配給業務만이 겨우 維持되고 있었을 뿐, 그 외의 事業은 거의 全無한 實情이었다. 油類購買事業에 있어서도 1958年을 例로 들면 漁民들의 需要量은 4,944%이었는데 全國의 漁業組合이 供給한 것은 그의 50%에 不過하였다.¹⁰⁾

(3) 水產團體의 販賣事業機能 微弱

解放以後 水產團體는 販賣事業의 機能마저도 제대로 發揮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主된 要因은 委販資金의 不足, 社會秩序의 混亂으로 인한 委販秩序의 문란, 客主勢力의 活潑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當時 「客主」에 대해서는 社會的으로도 問題가 되었던 것으로서 水協發足을 前後한 釜山日報記事를 보면 다음과 같이 客主에 관한 것이 連日 報道되고 있다.

「農林部는 4月부터 始作되는 안강망조기잡이철에 대비한 客主退治特別金融資金으로 2億5千萬환을 放出하다.」¹¹⁾

「尹春根 水協中央會長은 20日 記者會見에서 發足된 水協은 客主를 漸次 撤廢하겠다고 強調하였다.」¹²⁾

「中央會의 乾魚物委販場設置로 客主 一掃될 것인가.」¹³⁾

「慶尚南道當局 中央政府에 馬山·忠武 等地의 客主 消滅을 建議」¹⁴⁾

「까마득한 客主 消滅, 現行稅法 고쳐야」¹⁵⁾

이처럼 客主勢力과 그들의 活動은 全國的으로 猖獗하고 있었으며, 漁民經濟의 암적 存在였음에도 불구하고 水產團體는 그의 機能 微弱으로 이를 除去·抑制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當時의 實情이었던 것이다.

1950年代의 漁業組合 共販制度를 中心으로 한 李鍾禮氏의 「水產物流通構造에 관한 研究」에 의하면 當時의 漁業組合 가운데는 客主의 再委販量이 生產漁民의 委販數量을 능가하는 組合이 많았다.

10) 해무청, 해무, 1959, 3月號, pp. 96~121.

11) 釜山日報, 1962. 3. 9.

12) 上 同, 1962. 4. 22.

13) 上 同, 1962. 10. 30.

14) 上 同, 1962. 11. 29.

15) 上 同, 1963. 1. 23.

水産業協同組合의 成立과 그 發達過程에 관한 段階的 考察

例를 들어 1956年에 慶南의 馬山漁業組合委販量은 90%가 客主의 再委販분이었고, 나머지 10%만이 生產漁民의 一次 委販量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같은 現象은 慶北 九龍浦漁業組合의 물오징어 委販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즉 1956~1957年 사이의 委販量은 平均 生產量의 30%에 불과했고, 70%가 非委販되고 있었다는 것이다.¹⁶⁾

(4) 團體運營의 紊亂

事業利用料收入과 共同漁場行使料收入에 의해 事業資金과 團體의 運營財源을 마련할 수 밖에 없었던 舊水產團體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三大基本事業이 不振하게 되자 運營에 즉각적인 打擊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다 全國的으로 水產團體는 亂立現象을 보임으로써 事業區域이 狹小하거나 違正 事業量確保가 至難한 大部分의 漁業組合들은 零細運營을 면치 못하였다.

그러므로 水產團體는 漁民들로부터 過重한 經費負擔을 要求하게 되고, 團體 任職員의 紀綱도 解弛해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一部 組合은 當初 豫算額의 四倍까지 超過 執行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負債變通을 위해 私債까지 利用하는例가 있었던 것이다.¹⁷⁾

한편, 1962年 2月18日 當時의 朴正熙最高會議長은 全南地方의 初度巡視에서 「아직도 漁民을 摾取하는 組合役員이 있다면 모두 拘束하겠다.」¹⁸⁾고 까지 言命한 바 있다.

이러한 것을 綜合할 때 50年代의 水產團體는 그의 亂脈相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62年의 水協發足은 이러한 水產團體의 汚名을 씻는 하나의 契機가 된 것이다.¹⁹⁾

水產團體의 이와 같은 機能微弱과 運營不振의 累積現象은 結局 그 打開策으로서 團體組織의大幅的 整備 或은 그의 해체를 통한 새로운 단체체제로의 개편을 불가피하게 하였으며,²⁰⁾ 그후 農協의 設立은 이의 必要性을 더욱 促求하게 되었던 것이다.

3) 協同組合運動의 進展과 農協의 成立

(1) 解放後 最初의 協同組合法起草

解放後 協同組合運動은 크게 政府主導의 先 制度 後 組織의 構想과 民間主導의 先 組織 後 制度의樹立이란 2가지 方向에서 추진되고 있었으나 결국 民間에 의한 協同組合運動은 至極히 微弱했던 것 이므로 舊團體를 母體로 하는 政府主導의 協同組合立法活動의 方向으로 흐르고 말았다. 그 結果에 의해 誕生된 最初의 協同組合法이 1957年度의 農協法이었다.

解放後 協同組合에 대한 政府의 立法作業 草案이 最初로 나온 것은 政府樹立 以後였다. 1948年 10月30日에 農林部 農村指導局이 草案한 「協同組合組織法」案이 바로 그것이다.²¹⁾

그뒤 두번째로 1954年 4月1일에는 「產業組合法」案이 나온 바 있고, 이어 세번째로 나온 것이 「水產

16) 해무청, 前揭書, pp. 96~121.

17) 釜山日報, 1962. 2. 15.

18) 上 同, 1962. 2. 19.

19) 上 同, 1962. 4. 1.

20) 水協發足直前인 1961年 8月에 있었던 水產團體의 大幅的 整備는 이러한 團體運營의 不振打開策으로서 실시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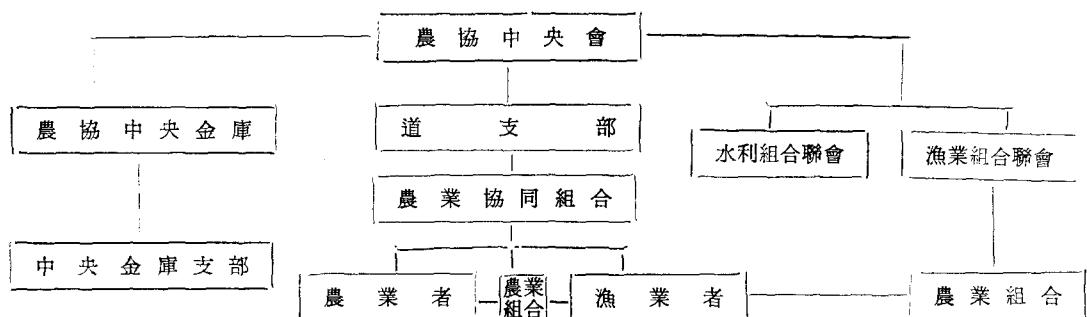
21) 農協問題研究所, 韓國農協의 成立過程(I), 農協初大, 1976, p. 13.

수 산 경 영 론 집

協同團體法」案이었다.²²⁾

政府의 最初의 協同組合法案이었던 「協同組合組織法」案의 骨子는 農業, 漁業, 商業, 工業 및 鑛業 그밖에 모든 業種을 范圍하는 綜合立法案이었다. 이것은 全文 4章과 61條로 構成되어 있었으며 最上位의 機構를 農協中央會로 하여 다음과 같은 組織體系를 構想하고 있었던 것이다.²³⁾

이 法案에 대하여 當時 各界의 輿論은 協同組合이 官主導로 推進되는 데는 問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協同組合을 自意的으로 組織할 수 있는 内面的 條件이 成就되지 못한 現段階의 農村實情下에서 이를 誘導·促進시키는 環境의 造成은 不得已한 措置라고 하는 意見의 一致를 보임으로써,²⁴⁾ 關係部處의 檢討를 거쳐 國務會議까지 通過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當時의 農林部長官이던 曹奉岩氏自身이 여기에 대한 確固한 主觀이 없었던 것이므로 이것은 無為의 첫 作業이 되고 말았다(〈그림-4〉 參照).



〈그림-4〉 政府樹立以後 最初의 協同組合組織體系 案

(2) 「産業組合法」案

1953年 11月 11일에 當時 李承晚大統領의 論示에 따라 金融組合을 改編하여 全國의 協同組合을 組織코자 한 「産業組合法案」을 作成한 적이 있다. 이것은 解放以後 政府에 의해 두번째로 나온 協同組合法案이었던 것이다, 全文 4章 78條 및 附則으로 이루어져 있었다.²⁵⁾

이 法案 역시 앞의 「協同組合組織法」案에 있어서 처럼 組合員의 資格을 職業에 關係없이 組合地區內의 全居住民과 產業法人 全部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組織體系는 大韓産業組合聯合會와 產業組合의 2段階로 區分하고 單位組合은 市·郡을 區域으로 하며, 여기에 漁民도 그 一員이 되게 하였다.

그러나 이 「産業組合法」案은 종래의 農漁村團體의 意識的 統合과 官僚的 育成에 主眼을 둔 「協同組合組織法」案과 같은 缺陷이 在해 있었던 것이므로 最終成立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말았다.

결국 上記 두 法案이 모두 失敗로 돌아가자 政府에서는 綜合協同組合立法活動을 止揚하고 產業別로 獨自의 制度創設의 方向으로 推進해 나갔다.

(3) 民間人에 의한 協同組合運動

22) 上揭書, p. 47.

23) 上 同, p. 19.

24) 上 同, p. 30.

25) 上 同, p. 47.

水産業協同組合의 成立과 그 發達過程에 관한 段階的 考察

解放後 民間에 의한 協同組合運動이 比較的 活潑히 展開되고 있었던 때는 1950年代이다.

1951年 7月 부산 피난時에 大韓勞總內에 農業協同組合組織推進委員會가 設置되고, 當時 勞動組合指導者 錢潤煥氏의 指導아래 全國的으로 1千餘個의 農協을 組織한 적이 있었다.²⁶⁾

그러나 이러한 運動은 同調者의 不足, 社會的 與件의 미성숙 등이 主要因이 되어 지속성을 갖지 못하고 말았으며, 다만 1950年代의 政府에 의한 協同組合法案 濫發時代에 이를 支援하는 役割로서 그치고 말았다.

(4) 農協法의 立法推進과 그 成立

解放後 政府에 의해 推進되던 上記의 두 協同組合法案의 失敗는 協同組合에 대한 総合立法의 構想이 非現實의 이었다는 것을 意味한다.

그리하여 農協法에 대해서는 農林部가, 水協法에 대해서는 當時의 海務廳이, 그리고 中小企業協同組合法에 대해서는 商工部가 각각 別度의 法案作成을 서두르게 된 協同組合個別法의 制定으로 흐르게 되었다.

農協法起草를 위하여 農林部는 1954年에 農林部, 國會, 金融組合聯合會 및 大韓農民會 등의 4個關係機關으로 하여금 農協法統一案을 摸索하게 하고, 아듬해인 1955年에는 當時의 國會內에 農協法起草委員會를 設置하여 그의 本格的인 作業을 진행시켜 나갔다. 그 결과 1955年初 3代國會의 農林·財經兩委員會는 각각 別途로 農協法를 起草하게 되고, 이와는 別途로 1955年 8月과 1956年 2月에 걸쳐 美國의 農業金融專門家 「에드워드·존슨」(E. D. Johnson)一行과 農協專門家 「쿠어퍼」(J. L. Cooper)를 각각 招請하여 諮問을 받기도 하였다.²⁷⁾

여기에서 「존슨」은 韓國農業信用制度改善을 위하여 郡의 金融組合을 「農業組合」(Agricultural Association)으로 改編하고, 金融組合聯合會는 道單位以上의 「韓國農業銀行」(The Agricultural Bank of Korea)으로 設立시켜야 한다는 案을 提出하였으며,²⁸⁾ 「쿠어퍼」는 部落組合, 農業組合, 特殊組合 및 市郡農協聯合會, 中央會의 4단체 組織體系에다 金融組合과 金融組合聯合會를 改編하여 信用組合과 農業銀行을 별도로 두는 全文 9章 135條에 달하는 「農業協同組合法」案을 정부에 建議하였다.²⁹⁾

위 兩人의 建議案을 中心으로 여러 가지 農協法案이 나왔으나 結局 「쿠어퍼」案을 基礎로 한 法案이 더 優勢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존슨」案보다 法體系가 整備되어 있었고, 組織間의 事業과 業務上의 마찰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 現實性을 지녔기 때문이다.³⁰⁾

이러한 案들을 壟臺로 1956年末 農林部와 國會農林委는 農協組織의 信用業務를 儉하는 것을 内容으로 하는 「農業協同組合法」案을 國會에 上程하게 되었으며, 財務部와 國會財經委는 農業信用을 別途로 하는 「韓國農業銀行法」을 上程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農協은 經濟事業만을 擔當하게 하고 信

26) 金潤煥, “韓國勞動運動의 歷史的 課題와 方向,”『韓國 經濟의 展開過程』, 1981, p. 256.

27) 農協問題研究所, 前揭書, p. 72.

28) 上揭書, p. 73.

29) 上 同, p. 73.

30) 上 同, p. 102.

수 산 경 영 론 집

用事業은 農銀에 專擔시키는 修正을 거쳐 두 案은 1957年初 國會를 通過하게 되었으며, 드디어 1957年 2月1日의 兩法 施行을 통해 오늘의 農協前身인 經濟事業만을 取扱하는 農協과 農業金融專擔取扱機關으로서의 農銀의 發足을 각각 보임으로써 日帝時代의 農事團體는 解放後 13年만에 解體를 보게 되었다.³¹⁾

그러나 日帝時의 產業組合이 信用業務가 削除되었기 때문에 萎縮된 것과 같이 信用業務가 除外된 初期農協은 法施行後 20,000個에 達하는 農協을 發足시켰으나 組合員의 經濟活動에는 別로 寄與하는 바가 없어 實質的인 發展도 보지 못했다.³²⁾

反對로 農業銀行 역시 農銀法 第1條에 「農業銀行은 農業協同組合의 發展, 農村經濟의 復興과 農民의 經濟的地位의 向上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고 規定하고, 第40條에는 「與信은 그 回收可能檢討性에 있어서 物的擔保能力보다 農產物生產能力을 更우 重要視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음에도 不拘하고 오히려 農協을 度外視하고 與信도 農產物生產能力보다는 物的擔保에만 置重하는 一般銀行의 傍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말았다.

결국 二元體制로 되어 있었던 初期農協時代의 農村組織의 矛盾은 많은 문제를 蒙起하고 있었으며 農業發展에 있어서도 別다른 效果를 期待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후 自由黨과 民主黨時節의 거듭되는 對內外的混亂과 紛糾를 거치는 過程속에서도 農協과 農銀을 統合하여 信用事業과 經濟事業을 兼營하는 綜合農協(Multi-purpose Agricultural Cooperatives)으로 發展시켜야 한다는 主張과 움직임이 계속되었다.

信用業務는 金融 그 自體의 特殊性에 비추어 公信力이 確立되어 있어야 하고 財政金融政策을 통하여 直接 間接으로 政府의 統制를 받아야 하므로 信用機關의 獨立이 要求되었던 것이며, 아울러 農協의 自主性도 尊重한다는 것이 처음에 農協에 대하여 信用事業을 分離시킨 意圖였다. 그러나 農民經濟의 發展이 여기에 對應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었으므로 하나의 組織을 통하여 多面的利用이 可能한 綜合農協으로의 改編이 現實的으로 문제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5.16 軍事革命 以後 革命政府의 1961年 5月 31日字 「農協 및 農銀 統合方針」이란 斷案에 의해 兩組織을 統合하는 新「農業協同組合法」이 成立된 것이다. 이것은 1961年 7月 29日字로 國家再建最高會議를 거쳐,³³⁾ 1961年 8月 15日을 기해 施行에 들어갔으며, 이로써 舊農協과 農銀은 單一組織으로 一齊히 統合된 오늘의 農協을 成立시킨 것이다.

이와한 農協의 成立과 發展은 水協法의 早速한 成立을 더욱 切實하게 하였다.

2. 水產業協同組合法의 制定過程

1) 「水產業協同團體法」案

1950年代의 協同組合에 대한 綜合立法構想이 失敗로 돌아가자 水產業分野에서는 獨自의인 制度樹

31) 農協中央會, 韓國農協 10年史, 1971, p. 28.

32) 上揭書, p. 29.

33) 上揭書, p. 34.

水産業協同組合의 成立과 그 發達過程에 관한 段階的 考察

立의 作業이 推進되고 있었다. 그 結果로 나온 것이 1954年에 當時 商工部 海務廳이 作成한 「水產協同團體法」案이었다. 이것은 水協運動의 과정에서 最初로 起草된 法律案이었으며,³⁴⁾ 1954年 1月 16日에 그의 審議를 위해 法制處에 回付되었다.

이 法案은 제1장 總則, 제2장 漁業協同組合, 제3장 漁業生產契, 제4장 水產製造業協同組合, 제5장 水產協同團體聯合會, 제6장 登記, 제7장 監督, 제8장 罰則으로 하여 總 141條로 構成되어 있었으며 그후 이것은 現行 水產業協同組合法案의 基礎가 되었던 것이다.

이 法案의 内容은 다음과 같다.

첫째, 「水產業協同團體」는 오늘날의 水協法 規程과 차이가 없는 非營利團體로 規定하고 있었다.

둘째, 組合의 運營은 協同組合의 지도원리에 準據 民主的으로 組織・運營하도록 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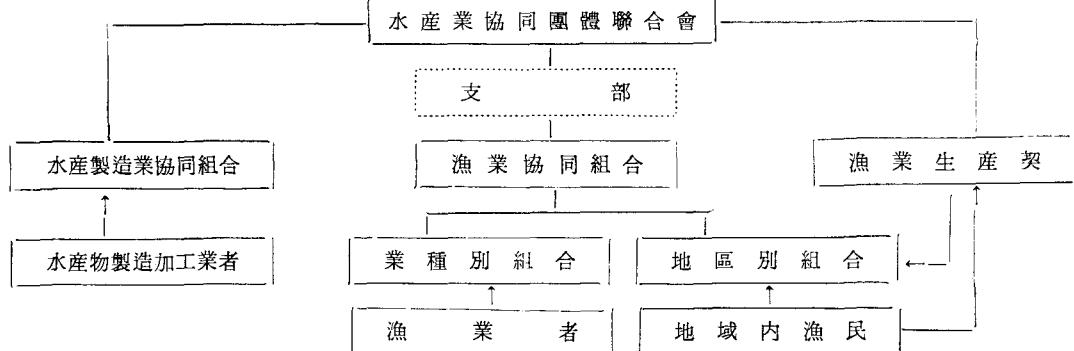
세째, 事業의 内容은 指導, 信用, 經濟, 共濟 등의 事業을 兼營하는 綜合型 協同組合이었다.

네째, 出資制度를 採擇하고, 組合員의 有限責任制로 하며, 出資 1口座의 金額을 均一하게 하였다.

다섯째, 系統組織은 2段階, 3形態로 規定하였으며, 地區別 組合下部에는 오늘의 漁村契와 類似한 「漁業生產契」를 두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法案은

- (1) 當時 審議 당국의 사무 緒주
- (2) 農協法案의 成立에 對한 진통의 연속
- (3) 法案自體의 未備 등의 理由로 1957年的 農協法成立과 때를 같이하지 못하고 말았다.

同法案에서 나타나고 있는 團體의 組織體系를 表示하면 다음 <그림-5>와 같다.



〈그림-5〉 「水產業協同團體」組織體系案

2) 「水產業協同組合法」案

解放以後 水協法制定을 위한 努力의 과정에서 政府에 의해 두번째로 作成된 水協法案이 여기서 말하는 「水產業協同組合法」案이다.

이것은 前記法案을 土台로 하여 역사 海務廳에서 作成한 것이며, 全文 143條와 附則으로 되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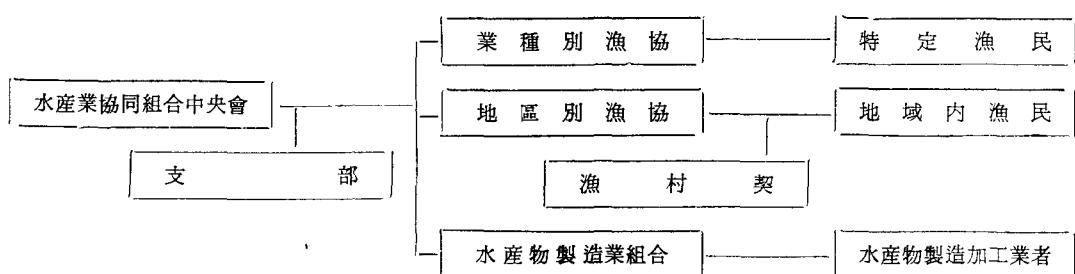
34) 水協中央會, 韓國水產業團體史, 1980, p. 276.

수 산 경 영 론 집

었다. 앞의 「水産業協同團體法」案과 比較하면 法律條項이 追加되고, 系統組織은 지금의 水協과 같은 3形態로 鼎立시켰으며, 「漁業生產契」를 「漁村契」로, 「水産業協同團體聯合會」를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로 改稱하는 등 内容을 整備하였다. 그리고 法律의 名稱도 現在의 水協法 名稱 그대로인 「水産業協同組合法」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i) 法案에 대하여 海務廳은 全國의 水產關係官會議를 통해 公聽會를 開催하여, 當時 大韓水產中央會로부터는 信用業務를 分離하는 建議案 등에 의해 補完된 結果를 1961年 1月 23日 法制處에 그 審議要請하였던 것이다.

同法案에 나타나고 있는 水協의 形態와 그 組織體系를 보면 다음 <그림-6>과 같다.



<그림-6> 「水産業協同組合法」案上의 水協系統組織

3) 水産業協同組合法의 成立

1961年 1月 23日 海務廳이 最終 成案하여 그 承認을 要請中에 있었던 「水産業協同組合法」案은 5.16軍事革命後 統合農協을 둘러싼 事態進展에 따라 별다른 檢討없이 當時의 立法機關이었던 國家再建最高會議의 議決을 거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것은 1962年 1月 20日 當時의 内閣首班(許政)에 의해 法律 第1013號로 公布되고, 同年 4月 1일로 그 施行에 들어갔다. 이로써 歷史以來 最初의 「水産業協同組合法」이 創設된 것이다.

日帝時代의 前近代的 水產團體制度—1950年代의 「綜合協同組合法」案 構想—50年代末의 「水産業協同團體法」案—61年の「水産業協同組合法」案의 과정을 거쳐 成立된 水協法은 第1條에 다음과 같이 그 目的을 明示하였다.

「本法은 漁民과 水產製造業者의 協同組織을 促進하여 그 經濟的・社會的 地位의 向上과 水產業의 生產力의 增強을 圖謀함으로써 國民經濟의 均衡있는 發展을 期盼을 目的으로 한다.」

이와 같이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成立된 水協法은 이땅에 半世紀 以上의 歷史를 가지고 存在해온 舊團體時代의 終末과 함께 새로운 漁民團體時代의 開幕이란 두가지 意味를 同時に 가져다 준 것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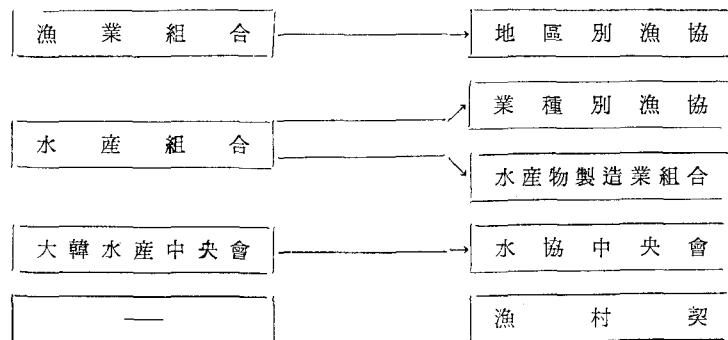
지금까지 水產團體는 特權的 支配層의 專有物이 되어왔던 것이다. 그러나 水協法의 誕生으로 이제 漁村社會에는 그와 같은 團體의 存立이 容納될 수 없게 되었다. 水協法은 漁民 스스로에 의해 組織되고, 그들自身的 意志와 必要에 의해支配·運營되어지는 組織만이 存立可能하게 하였으며, 組合事業의 平等한 利用을 通過 漁家經營의

水産業協同組合의 成立과 그 發達過程에 관한 段階的 考察

脆弱性을 스스로 克服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리고 渔村의 繁榮과 渔民自身들의 社會的 地位向上을 위한 求心體를 發展시키는 契機가 되었다.

水協法의 成立과 그 施行으로 一齊히 解散된 舊水產團體의 種類와 그의 改編形態를 보면 다음과 <그림-7>과 같다.

<그림-7> 舊水產團體의 改編形態



3. 水產協同組合法의 特徵

1) 水產團體制度와의 差異

水協法은 過去의 水產團體法과는 그의 目的부터 根本的으로 다르다.

例를 들어 漁業組合은 「組合員으로 하여금 渔業을 하기 위하여 渔業權을 取得하거나 渔業權의 貸付를 받고, 또한 組合員의 渔業 또는 이에 關한 經濟 或은 經濟에 必要한 施設을 建을目的으로 한다」³⁵⁾로 되어 있는데 대하여, 水產業協同組合法은 「水產業者의 協同組織을 促進하여 그들의 經濟的・社會的 地位의 向上은勿論 水產業의 生產力增強을 通해 國民經濟의 均衡있는 發展에까지 기여할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水產團體制度가 組合員의 加入과 脫退의 自由를 認定하지 않고 強制化한 것이라든가 水產業의 圓滿한 支配와 統制를 遂行하기 위하여 國策實施의 補助機關으로서 그것을 必要로 하고 있었는데 대하여, 水產業協同組合은 加入의 自由와 民主的 經營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水產團體가 組合員의 資格을 渔業者에 限定하지 않고 「水產物의 製造, 去來 및 保管을 營業으로 하는자」全員에게 부여함으로써 團體運營의 非漁民的 展開는勿論 오히려 渔村資本家 階級을擁護하는 矛盾을 암고 있었는데 비추어, 水產業協同組合法은 協同組合의 基本原理에 따라 階屬과 業種別로 別途의 組織을 갖게 하였다.

그러므로 水協法은 地區別組合과 業種別組合과를 區分하여 利害의 對立關係에 있는 者들과의 同一組織내에 있어서의 競爭을 事前 조정한 것이다.

이 以外에도 出發 自體에서부터 根本的으로 差異가 있는 過去의 水產團體制度와 水產業協同組合

35) 朝鮮漁業令(1929.1.26 制定), 第47條 2項.

수 산 경 영 론 집

制度 사이에는 일일히 列舉할 수 없는 많은 相異點이 存在한다.

2) 水協法과 協同組合指導原則

(1) 協同組合의 指導原則

協同組合의 指導原則(principles of cooperatives)이란 協同組合의 理念을 具現시키는데 必要한 協同組合組織 固有의 運營法則을(useful clues as to how these association are organized and operated)을 말한다.³⁶⁾

이것은 協同組合組織自由의 原則과 民主的 運營의 原則 등을 비롯한 다음의 6個原則을 일컫는 것으로서 國際協同組合聯盟이 이를 採擇하여 勸告하고 있다.

- ① 組織自由의 原則(principle of voluntary)
- ② 民主的 運營의 原則(principle of democratic organization)
- ③ 投下資本에 대한 配當利子制限의 原則(principle of limited dividend of interest)
- ④ 剩餘金의 利用高配當의 原則(principle of dividend on purchase)
- ⑤ 教育促進의 原則(principle of promotion of education)
- ⑥ 協同組合間 協同의 原則(principle of cooperate with other cooperatives)

以上의 6個原則은 1963年 第22回 I.C.A(국제협동조합聯盟)「런던」大會에서 修正되고, 1966年 第23回 I.C.A「부엔나」大會에서 두번째로 決定하여 採擇된 가장 最近의 國際協同組合原則이다.

이 原則은 1937年 第13回 「파리」大會에서 國際的으로는 처음으로³⁷⁾ 確定되었던 7個原則 가운데 現金去來의 原則(cash trading and sales at market price)과 政治宗教上의 中立原則(potitical and religious neutrality)의 2個原則을 削除하고 대신에 위의 ⑥項을 新設하여 從前의 諸原則을 더욱 整備하고 簡素化시킨 原則인 것이다. 國際協同組合機構는 이러한 原則을 審議하고 採擇하여 이를 各國의 協同組合에 대해 準守할 것을 勸告하는 機關이다.³⁸⁾ 지금까지 協同組合發達經驗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諸原則이 지켜진 協同組合들은 빛나는 成功을 이룩한 반면에, 그 反對인 組合들은 結果的으로 失敗하고 말았다는 歷史的 教訓이 있다. 그러므로 國際協同組合聯盟은 協同組合의 國際的發達을 위하여 위의 6個原則가운데 ①~④까지를 모든 國家의 協同組合이 반드시 지켜야 할 強制的基本原則(basic cooperative principles)으로 定하였다. 그리고 ⑤~⑥까지는 各種의 協同組合의 形便에 따라 採擇하되 가급적 擴大的 實施를 勸告하는 任意原則으로 定한 것이다.³⁹⁾

이러한 國際的協同組合原則은 資本主義下의 같은 經濟組織으로서 企業과의 差別을 짓는 「메르크발

36) Martin A. Abrahamsen, *Cooperative Business Enterprise*, McGraw-Hill Book Company, 1976, p. 47.

37) 協同組合原則을 國際協同組合聯盟(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이 中心이 되어 國際的으로 共通된 原則으로 採擇하게 된 것은 1937年부터이며, 그 以前에는 웃취렐原則을 基本敎理(catchism of foundation)로 認定하고 있었다(Ibid., p. 49.).

38) 協同組合原則을 準守하도록 勸告하고 있는 國際機構는 國際協同組合聯盟(ICA)이다. 이 機構는 協同組合에 대한 범세계적 단일 國際機構이며, 1895年에 創設되고 每 4年마다 世界大會를 開催하며, 1979年現在 65個國이 會員이 되어 있다. 그의 役割은

①各國協同組合의 國際的 代辦 ②協同組合原則의 世界的 宣傳普及 ③世界的 協同組合運動의 促進
④世界食糧計劃參與 등이다(二神史郎譯, 國際協同組合運動史, 家の光協會, 1979, p. 266).

39) P. E. Roy, *Cooperatives*, Illinois, 1968, p. 211.

水產業協同組合의 成立과 그 發達過程에 關한 段階的 考察

인 것이며, 그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롯취엘原則(Rochdale Principles)에 基礎를 두고 作成된 것이다. 그러나 롯취엘原則도 그 以前에 있었던 「윌리엄 킹」(William King, 1786~1865)의 消費組合原則,⁴⁰⁾ 「찰스 후리에」(Charles Fourier, 1772~1873)의 「파랑주」(Phalange, 일종의 協同組合共和國原則),⁴¹⁾ 「필립 븁세」(Philip J. Buchez, 1796~1865)의 生產組合原則⁴²⁾ 등의 初期協同組合原則에서 發展된 것이라는 것을 留意할 必要가 있다.

그러면 롯취엘開拓者의 1人이었던 「홀리 옥크」(George Jacob Holyoake, 1817~1906)에서 「코올」(Cole)을 거쳐 「웨보」(Catherine Webb)에 의해 傳해지고 있는 롯취엘原則 9個項을 以下에서 소개해 보기로 한다.⁴³⁾

- ① That capital should be their own providing and bear a fixed rate of interest.
- ② That only the purest provisions procurable should be supplied to members.
- ③ That full weight and measure should be given.
- ④ That market price should be charged and no credit given nor asked.
- ⑤ That "profits" should be divided prorata upon the amount of purchases made by each member.
- ⑥ That the principle of "one member one vote" should obtain in government and the equality of the sexes in membership.
- ⑦ That the management should be in the hand of officers and committees elected periodically.
- ⑧ That a definite percentage of profits should be allocated to education.
- ⑨ That frequent statements and balance sheets should be presented to members.

協同組合原則이란 그것이 固定不變의 것은 아니라는 것을 以上의 롯취엘原則을 통해서 알 수 있다. 資本主義社會에 適應하기 위해서는 그 本質에 離脱됨이 없는 범위內에서 資本主義經濟의 發達段階에 따라 適合한 것으로 항상 整備·補完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點에서 以上의 6個原則은 最近에 制定된 것이며, 最適의 運營原則으로 認定되고 있다. 때문에 各國은 協同組合制度의樹立과 協同組合組織을 폐합에 있어서 이러한 原則의 內容과 精神이 가급적 最大한 反映되도록 配慮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企業化하고 있는 協同組合의 真否判斷 基準은 이 原則의 實現與否에 依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2) 水協法에 있어서 協同組合原則의 規程

그러면 우리나라 水協法은 上述한 協同組合의 諸原則에 關한 內容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規定

40) 킹(W. King)은 1827年에 영국에서 최초로 소비조합을 조직한 바 있으며, 조합운영 原則을 5개로 제시한 바 있으나 그가 가장 強調한 原則은 ① Cooperation is voluntary and not compulsory ② Cooperatives should be neutral as to political and to religious tents의 2가지였던 것이다 (Martin A. Abrahamsen, *op. cit.*, p. 49).

41) 宋種福, 協同組合論, 博英社, 1975, p. 101.

42) 上 同.

43) C. Webb, *The Story of a Peaceful Revolution*, 1912(Martin A. Abrahamsen, *op. cit.*, p. 48).

수 산 경 영 론 집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첫째, 水産業協同組合은 「奉仕의 原則」(principle of service)에 입각하여 운영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第6條).

이것은 運營의 實體的인 面에 있어서는 일반企業과 마찬가지이지만 그目的을 事業의 支配나 營利의 追求에 두지 않고 組合員經濟를 最大한 助成하는데 두고 있는 水協의 協同組合本質에 대한 内包的 規定이라 할 수 있다.

둘째, 剰餘金의 還給 및 配當原則에 대한 規定(第142條 ③項)

水協이 奉仕原則을 유감없이 發揮한다면 그經營에 剰餘金이 생길 餘地는 전혀 없다. 그理由는 原價補償主義의 實費經營에支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水協의 運營過程에 있어서 剰餘金의 發生은 피할 수 없는 現實이며, 한편 「教育促進의 原則」등 서비스의 基礎를 確保하기 위해서도 意識的으로 水協은 剰餘金을 發生치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러한 組合經營의 實際에 對比하여 剰餘金의 還給原則이 規定되는 것이며, 더우기 그 還給은 企業方法이 아닌 事業利用高를 基準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세째, 組合員數의 不特定性(第32條)

水協은 組合員資格의 質的 純粹性을 위해 一定한 資格要件을 두고 있으나 組合員數와 加入 및 脱退에 있어서는 이를 制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組合加入·脫退의 自由와 組合員數의 무한정성을 認定하고 있다.

株式會社는 發行株式의 數에 의하여 社員數의 最高限度가 정해지며, 他企業도 이점에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水産業協同組合은 法律的으로 組合員의 數量 制限할 수 없게 되어 있다.⁴⁴⁾

네째, 組合員 및 會員의 事業 내지 經濟의 助成을 위한 事業實施의 原則

이점에서 水協은 企業이 自體의 利潤追求를 위해 株主의 意思와는 無關하게 各種事業을 營利的으로 實施하는 것과 區別되며, 이 原則의 離脫을 防止하기 위해 水協法은 同法 第6條 2項을 통하여 水協의 營利的, 投機的 行爲를 禁止시키고 있다.

다섯째, 組合員과의 人格的 平等性과 「顧客의 社員關係」의 重視

이점에서 水協은 美國의 協同組合이 「利用高 平等主義原則」,⁴⁵⁾ 株式會社가 「資本平等의 原則」을 각각 取하고 있는 것과도 다르며, 一般企業이 會社財產의 持分權 關係를 強調하고 있는 社員權과도 區別된다.

水協은 組合員 以外의 者에 대해서는 事業利用을 制限하며, 組合員에 限해서만 原則的으로 그것을 認定하고 있다. 그러므로 組合員은 한편으로는 水協事業을 利用하고 助成해야 할 責任과 權利가 있는 것이다.

44) 協同組合의 無限定性 原則은 獨逸産業經濟組合法의 規定事項이라고 Otto Glass는 그의 協同組合論 "Genossenschafts kunde"에서 지적하고 있다(Otto Glass, Genossenschafts Kunde, 1949, p. 56).

45) 黑澤一請은 「制度學派 協同組合論の性格分析」에서 最近 美國의 協同組合은 많은 수가 1인 1표주의(one-man one vote)에 대처되는 利用高 比例主義(One dollar of patronage one vote)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黑澤一請, 「協同組合の經營構造」, 水產研究會, 1961, p. 12.

水産業協同組合의 成立과 그 發達過程에 관한 段階的 考察

이와 같은 組合과 組合員과의 사이에서 事業을 中心으로 하여 成立되고 있는 특히 다른 組織과 区別되는 制度的 關係를 「顧客的 社員關係」(Kantenschoft)라고 한다.

여섯째, 特例의 規定

水協法 第14條의 他法律準用規程은 第14條를 보면 水協이 다른 事業團體와 同等한 地位에서 事業을 實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營利的 事業에 관해서는 關係法律의 適用을 排除시켜 水協事業의 免稅惠澤과 事業 獨占的 有利性의 保障인 것이다.

이러한 特例의 認定은 水協組織의 「奉仕性」, 「非營利性」 그리고 「助成事業體」라고 하는 特質 때문인 것이다.

以上은 水協法의 協同組合 一般性에 관한 規定을 分析한 것이다. 그러나 水協法은 그外 韓國固有의 特質이라 할 수 있는 内容도 規定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 水協의 漁業權管理主體로서의 規定(水協法 第67條), 둘째, 水產資金 및 水產金融의 獨占的 取扱機關으로서의 認定(同法 第132條 3項), 세째, 政府 監督權의 強化와 干涉機關의 重疊性, 네째, 水協中央會長에 대한 政府任命制, 單位組合長에 대한 中央會長의 任命權制度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한국의 水協法에 대하여 다른 나라의 水協法과 그 相異點 내지 類似點을 일일히 比較할 수는 없지만 이상의 분석결과로서 알 수 있는 것은 部分的으로는 官僚團體의 要素를 지닌 점도 없지 않으나 全體的으로 보아 韓國水協法은 日本의 水協法, 台灣의 漁會法과 비교할 때 協同組合法으로서 그 遜色이 멀어진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問題는 制度 그 自體에 있는 것이 아니고 制度의 重要性을 意識할 수 있는 組合指導者의 組合運營方法과 그 哲學이다.

4. 各國의 水協制度 採擇現况

協同組合法은 다른 種類의 法律과 달리 經濟的 弱者와 그들의 組織을 保護하고 동시에 그들의 利益을 圖謀하게 하는데 그 目的을 두고 있는 制度로서의 特徵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각국이 協同組合法成立을 促求하여 온 것도 이러한 制度利用의 機會와 그 範圍를 擴大하고자 하는 데 目標를 둔 것이다.

協同組合法 가운데 政府의 協力義務條項, 各種 去來關係 書類作成과 報告義務의 緩和, 課稅의 特例, 集團去來의 獎勵, 獨占禁止法適用에의 排除 등에 관한 條項의 規定 등은 各國의 協同組合法이 지닌 共通的인 것이다. 協同組合은 이러한 制度의 措置를 통하여 資本家와 對抗이 不可能한 經濟的 弱者를 資本主義企業 一般으로부터 保護하는데 有利한 立場을 지닐 수 있었다.

특히 協同組合法이 우리나라 水協法과 같이 水產業의 生產力發展과 國民經濟의 發達에까지 寄與해야 하는 制度로서의 使命을 지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支持하는 社會의 協同組合法에 대한 期待는 더욱 큰 것이며, 組合發展은 곧 組合에 대한 法律制度의 樹立과 採擇에 의해 크게 左右된다고 볼 수 있다.

수 산 경 영 론 집

「샤먼」獨占禁止法 (The Sherman Antitrust Act) 以後 심한 타격(double jeopardy)⁴⁶⁾을 받은 美國의 協同組合이 「케이퍼 볼스티드」法 (The Capper Volstead Act)⁴⁷⁾에 의해 一大躍進의 契機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組合制度 그것이 組合發展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인 代表的인 例이다.

이러한 點에서 世界主要國들이 採擇하고 있는 水協法의 種類와 그 採擇與否에 관해 밝혀본 것이 다음面의 <表-8>이다. 이것은 漁業協同組合에 관해 唯一하게 연구하고 있는 「마카릿드 디그비」(Margaret Digby)의 「漁民協同組合」에 紹介되고 있는 各國의 漁協關係 法律을 基礎로 하여 作成하였다.

여기서 보면 調査된 17個中에서 水協單獨法을 갖는 國家는 「놀웨이」, 대만, 日本 및 韓國의 4個國에 지나지 않으며, 協同組合法下에서 水協組織을 폐하는 國家는 「프랑스」, 獨逸 등 12個國으로 되어 있고, 商法下에서 다루어 나가는 곳은 「벨기에」의 1個國이다.

또한 大部分 國家의 協同組合法은 20世紀 以後에 成立되었으며, 그 中에서도 水協法은 더욱 最近인 2次大戰以後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水協은 이제 그 發展途上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水產業이 그 나라의 國民經濟에 占하는 比重이 큰 나라일수록 別途의 協同組合制度를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46) 이 法은 1890年에 美下院「샤먼」의원에 의해 採擇된 美國 最初의 「연방獨占禁止法」이다. 이 法 第1條와 2條를 통해서 「協同組合과 같은 特別한 事業體(special concern)에 대해서는 非合法的 去來 制限行爲 (Illegal restraint of trade)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協同組合에 관한 直接的인 記述이 없었기 때문에 (Act did not mention cooperatives directly), 州에 따라서는 協同組合들이 심한 타격을 받은 곳도 있었다 (Martin A. Abrahamsen, *op. cit.*, pp. 191~192).

47) 이 法은 1922年 2月 18日에 上院「케이퍼 볼스티드」의원에 의해 다시 採擇된 Anti-trust Act이다. 「샤먼 法」을 개정한 1914年의 Clayton Act에 이어 세 번째로 나온 연방獨占禁止法으로서 여기에 의해 지금까지 不分明했던 協合組合을 明確히 하고, 獨占금지법 배제를 위해 包括的인 協合組合法(Comprehensive cooperative legislation) 제정을 제안했다.

이어 1926年에 「Cooperative Marketing Act」가 제정되고, 以後 協同組合去來는 어떠한 反獨占法에도 拘屬받지 않게 되었다 ("They did not violate any anti-trust laws," *Ibid.*, pp. 193~196).

水產業協同組合의 成立과 그 發達過程에 關한 段階的 考察

<表-8>

世界主要國의 水協制度保有 現況

	특별법 수협조직법률명	제정자	최초수협설립제도	제정자
놀웨이	○ 생선판매법	1951	기업설립 및 등기에 관한 법률	1890
대만	○ 어회법	미상	어회법	1948
프랑스	✗ 조합법	1867	동업조합법	1922
벨기	✗ 상법	1873	미상	미상
독일	✗ 독일산업 및 경제조합법	1867	산업 및 경제조합법	1867
한국	○ 수협법	1962	어업조합규칙	1912
스웨덴	✗ 경제조합법	1911	경제조합법	1911
풀랜드	✗ 협동조합법	1876	협동조합법	1876
영국	✗ 산업경제조합법	1852	우애조합법	1834
인도	✗ 협동조합법	1912	신용협동조합	1904
카나다	✗ 주변협동조합법	1909	웨백주 협동조합법	1909
미국	✗ 협동조합판매법	1926	케이퍼블스테드법	1922
말레이지아	✗ 협동조합령	1948	협동조합조례	1927
실론	✗ 신용협동조합법	1911	신용협조합법	1911
인도네시아	✗ 협동조합조직에 관한 규칙	1915	협동조합에 관한 규칙	1915
일본	○ 수협법	1948	어업조합규칙	1902
태국	✗ 협동조합법	1928	미상	미상

註: ○표는 水協單獨法을 표시함.

資料: ① Margaret Digby, *Cooperation for Fishermen*, I.C.A., 1959.

② 農林中央金庫調査部, 世界の漁業協同組合, 日本, 1963.

③ 農協中央會, 世界諸國의 協同組合運動, 1968.

④ ICA Regional Seminar Report, 1981.3, Seoul, Korea.